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- 한미 FTA체결 등 시장개방의 확대와 농업·농촌의 패러다임 변화로 농업의 어려움이 증대되어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설치한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
- 농업인 단체의 무상위탁 관리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로 농업경쟁력을 확보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☐ 농특산물 직판장 신축건물

- 위 치 :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1-1번지 외 5필지
(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선산휴게소 내)
- 연 면 적 : 49.5m²
- 건축가격 : 95,000천원(설계가격 기준)

4. 참고사항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제27조 및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5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4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잡종재산 대부시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,
- 한미 FTA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 및 농업·농촌의 패러다임 변화로 농업의 어려움이 증대되어 지역농산물의 판로망 개척 및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설치한 농특산물 직판장을 농업경영인 단체에 무상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임
- 다만, 상·하행선 모두 상설직판장을 설치 무상위탁 운영할 경우 이용객 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
-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산물 브랜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, 농산물 판로망 확보 및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본 계획안과 같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